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등 요청의 방법을 구체화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원 시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방법 신설

(안 제13조의5, 별지 제9호의2 서식, 별지 제9호의3 서식)

1) 진료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준용

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절차 등 신설

(안 제27조, 제27조의2, 별지 제16호의2 서식, 별지 제17호의3 서식)

1) 시·도지사에게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증 제출 의무화

2)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사전심의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

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24.10.29.)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30조의6)

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6조의4)

1)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2)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권한 명시

마. 「의료법」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개정사항 반영(별지 제23호의6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진료기록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은 “진료기록의 전송등”으로 본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또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송부등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환자가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전송등을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진료기록 전송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사전심의 승인증

제27조의2를 제27조의4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및 이 조”로 하고, 제2

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가 사전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의”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사전심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사업계획서 사본
- ②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의 지역 병상 수(이 경우 지역 병상 수는 사전심의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4. 사전심의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신청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승인 여부를 시·도지사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회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심의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사전심의 승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승인은 그 승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지역별·종별·기능별 특성 등에 따라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개설허가를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전심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3(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신청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사전심의를 받은 병상 수와 동일한지 여부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심의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심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제5항”을 “영 제42조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의4의 제목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을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운영·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및 제2항에서”를 “부터 제3항까지”로, “접수·분석”을 “접수·분석 및 자율보고 시스템 운영”으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율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전송등)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생년월일
	주 소	
동의 범위	01. 열람 [] / 02. 사본 발급 [] / 03.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전송등 [] (동의할 사항 []에 “√” 표시)	
	의료기관 명칭	(전송시) 전송받을 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간	
	발급(전송등) 사유	
	발급(전송등) 범위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예시) 진료기록부 사본, 처방전 사본, 수술기록 사본,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의 사본,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간호기록부 사본, 조산기록부 사본,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등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위 신청인()이 위 동의 범위 란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 또는 「의료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등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전송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의료기관 현황]

의료 기관	명칭	종류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일반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중 해당 구분에 √ 표시합니다)
	소재지	병상 신증설 구분 [] 신설 / [] 증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인력수급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그 밖의 종사자 명	

설립 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 병원	07 기타
	[] 시도 립	[] 시군 구립	[] 지방 의료 원	[] 기타 공립	[] 학교 법인	[] 특수 법인	[] 종교 법인	[] 사회 복지 법인	[] 사단 법인	[] 재단 법인	[] 회사 법인	[] 의료 법인	[]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	[] 사회적 협동 조합		
08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종류: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06정신병원)
2. 병상 수는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과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 설치)을 포함하고, 신생아실, 응급실병상(응급환자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합니다.
3.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에 √ 표시합니다.
4. 요양기관기호란은 병상 증설 심의 신청 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신청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자격 종류	자격 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개설자 (대표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사전심의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 리 기 관 (관할 시·도)	→	검 토 처 리 기 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결 재 처 리 기 관 (관할 시·도)	→	사전심의증 발급 처 리 기 관 (관할 시·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의료기관 개설(증설) 필요성 및 향후 진료 추진계획

제 호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 신설 / [] 증설)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병상	병상
	진료과목			
	설립 구분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비고	※ 위원회 심의 시 특이사항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유 의 사 항				
1.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내에 본 승인증을 첨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의료기관 운영현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1. 의료기관 유형			
①병원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 [] 기타()
②응급의료기관유형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비지정 [] 응급실 미운영		
③전공의 수련	[] 인턴·레지던트 [] 인턴 [] 비수련		
④설립유형	[] 국립 [] 공립 [] 지방공사 [] 학교법인		
	[] 특수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 개인 [] 기타()		
⑤간호관리료 등급	[] S등급	[] A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미신청		
⑥가정간호사업	[] 시행 [] 미시행		

2. 병상운영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허가병상수			병상	기타 진료 시설	응 급 실	병상
가동 병상수	총 합		병상		수 술 실	실
	일 반 병 상		병상		회 복 실	병상
	중환자실	성 인	병상		분 만 실	실
		소 아	병상		인공신장실	실
	신생아실	베지넷	개		낮 병 동	병상
		인큐베이터	개		외래진료실	실
기타	[] 무균치료실 [] 격리실 [] 조혈모세포처리실 [] 정신병상					
	[] 결핵병상 [] 재활병상 [] 나병동 [] 장기입원병상					
	[] 한방병상 [] 기타 ()					

3. 개설과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개설진료과목	총 과목(개설허가증을 토대로 기재합니다.)
진료과목 개설현황	[] 내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피부과 [] 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성형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의학과 []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 치과 [] 응급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영상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 결핵과
	[] 핵의학과 [] 한의과 [] 직업환경의학과 [] 예방의학과
	[] 기타

작성방법

□ 주요 진료현황

1. “입원환자 실인원”은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을 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2. “입원환자 연인원”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환자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3. “외래환자 실인원”은 실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4. “외래환자 연인원”은 응급환자수를 포함한 총 환자수로서, 환자 1명이 1일에 2개과 진료를 받는 경우는 2명으로 산정합니다.
5. “응급환자 실인원”은 일일 응급실 방문 내원환자수의 합을 적고, 병원 도착 전 사망환자(DOA)를 포함합니다.
6. “응급환자 연인원”은 응급실 입원환자(6시간이상 재원)의 재원일수의 합 또는 24시간 동안의 내원환자수(실인원)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적습니다.
7. 중환자 실적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8. “중환자 실인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입실) 또는 퇴원(퇴실)한 환자수로 환자 1명이 입원기간 중에 중환자실에 2회 입실(퇴실)을 반복했다면 중환자 실인원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
9. “중환자 연인원”은 입원(입실)환자 기준은 일일시점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퇴실) 환자 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10. “원내조제처방건수”는 외래환자와 응급환자(입원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5(진료기록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은 “진료기록의 전송등”으로 본다.</u> <u>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또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송부등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환자가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전송등을 하여야 한다.</u> <u>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진료기록 전송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 ----- ----- ----- -----

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 ⑥ (생략)

<신설>

1. ~ 6. (현행과 같음)

7.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사전
심의 승인증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
전심의)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가 사전심의
(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의”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6호의2서식의 사전심의 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사업계획서 사본

②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의 지역 병상 수(이 경우 지역 병상 수는 사전 심의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
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건복지
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
부

4. 사전심의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위원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종합
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
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
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첨
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신청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
급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
하고 그 승인 여부를 시·도지
사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내 회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심의 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사전심의 승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승인은 그 승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지역별·종별·기능별 특성 등에 따라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개설허가를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전심의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신 설>

다.

제27조의3(의료기관 개설허가 본
심의)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
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
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신청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
관의 병상 수가 사전심의를
받은 병상 수와 동일한지 여
부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위원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7
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서류의 보완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청인이 심의 개시 예정일의 전
날까지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
항 이외에 본심의의 기준, 절차,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3조의 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개설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설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설허가를 할 수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신청서류의 전부 또는 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4(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삭 제>

<삭 제>

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 시
·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
우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
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
·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①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기록보
관시스템의 구축 ·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진료기록부등
을 안전하게 관리 · 보존하는 데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① ~ ③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④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사
항을 포함한다) · 제27조의3(제3
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및
이 조-----

-----.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
·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① -----
영 제42조제6항-----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u>자율보고의 절차 등</u>) ①·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보고의 <u>접수·분석</u>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u>자율보고의 운영·절차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율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④ --- <u>부터 제3항까지</u> ----- ----- <u>접수·분석 및 자율보고 시스템 운영</u> ----- ----- -----.
--	--